



디자인·인쇄\_국군인쇄창

###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는 경우

**Tip!**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판례)

제공자	제공대상자
물품생산업체 임원	- 물품검사업무 담당자
고소인	- 담당 수사관
분쟁조정 신청자	- 담당 공직자
행정심판 피청구인	- 심판담당 공직자
피의자	- 담당 수사관
납품업체 직원	- 물품조사업무 담당자

### 선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추석선물 자가진단 체크사항



## 청탁금지법이란?

### 부정청탁의 금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 |                |               |
|----------------|---------------|
| ① 인·허가 등       | ⑧ 보조금·기금 등    |
| ② 처벌 감경·면제     | ⑨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
| ③ 인사           | ⑩ 학교 성적       |
| ④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 | ⑪ 병무          |
| ⑤ 수상·포상        | ⑫ 평가·판정       |
| ⑥ 직무상 비밀 누설    | ⑬ 행정지도·단속·감사  |
| ⑦ 계약           | ⑭ 수사·재판·중재    |

### 금품등 수수 금지

100만원 이하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수수시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금품 수수시 형사처벌

※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도 공직자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

## 예외규정이란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금품 수수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말합니다.



음식물 ▶ 3만원 이하

단,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선물 ▶ 5만원 이하

- ※ 농수산물·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한 제품을 말합니다.
- ※ 농수산물·가공품에는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경조사비 ▶ 5만원 이하  
(축의금, 조의금)

단, 화환·조화 10만원

'18. 01. 17. 시행령 개정 반영

**Tip!**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농수산물 선물 5만원

가능

그 외 선물 5만원

농수산물 선물 4만원

불가능

그 외 선물 6만원

## 추석 명절 맞이 사례별 Q&A

### 적용 범위

#### 시민 - 공직자

Q. ○○동에 거주하는 주민A씨는 명절을 맞아 ○○동장에게 음식이나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죄도 될까요?

A. 원칙적으로 동장과 주민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원)이하의 명절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 장인어른 - 공직자

Q. 명절을 맞아 장인어른이 공직자인 사위에게 20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장인어른의 선물, 받아도 되는 건가요?

A.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금액 제한 없이 받아도 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4호)

\* 민법 제 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한다.

#### 공직자등의

#### 배우자 - 민간회사

Q.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민간회사로부터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명절 선물을 받게 된다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나요?

A. 민간회사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소속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해당 회사와 직무관련이 있더라도, 민간회사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하급자 - 상급자

Q. 공공기관 내 상급자에게 여러명이 돈을 모아서 선물하는 경우 상한액 5만원을 넘어도 될까요?

A.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금지됨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금품제공자들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5만원(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을 준수**해야 합니다.

